

● 산업통상부공고제2026-484호

「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7월 13일

산업통상부장관

「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

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제명을 정비하고,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 허가 시 검증을 위한 행정행위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 정비(산업통상부장관 소관 → 산업통상부 소관)

나.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 허가 시 검증을 위해 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가 가능한 근거 조항을 신설함(안 제4조제3항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

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, 세종정부청사 12동 산업통상부 혁신행정

담당관실

- 전자우편 : bsjung85@korea.kr

- 팩스 : 044-203-4798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혁신행정담당관실(전화 (044) 203 - 5532, 팩스 044-203-4798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